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 - 67호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최근 식문화의 변화로 야외 식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법에 옥외영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의 합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영업제한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라. 조리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7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연결하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

제4조(영업시간) ① 임실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장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장의 운영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
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행정조치) 제5조를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
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
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